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부의 적극 참여 촉구 건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214
----------	------

2019년 12월 19일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9.11.13. 김태수 의원 외 11명 공동발의

나. 회부일자 : 2019.11.14.

다. 상정 일자 : 제290회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

- 2019년 12월 19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지난 2015년 6월 체결한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 최종합의서」에 따라 3개 시도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최소화 노력과 선제적 조치의 이행을 전제로 잔여 매립부지(제3, 4매립장) 중 3-1공구(103만㎡)를 사용하고, 대체매립지확보추진단을 구성·운영하여 대체매립지 조성 등 안정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하기로 함. 다만, 대체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하기로 합의함.
- 서울시는 그간 매립면허권 양도·양수 신고 완료, 매립지 편입부지 보상금 이전, 반입수수료 가산금(50%) 지원 및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

구성 등 최종합의서의 이행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바 있음.

- 올해 6월에는 3개 시·도지사 공동으로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관련 환경부와 3개 시·도 공동 추진 정책건의문」을 환경부에 제출하였고, 11월에는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대체 매립지 조성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여 해당 중앙부처에 전달한 바 있음.
- 수도권매립지는 건설 당시부터 환경부의 주도로 관리해온 광역폐기물 처리 시설로 관련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모든 사항을 환경부가 통제하는 등 지도·감독의 역할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음.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에 따른 문제는 비단 3개 시·도만의 문제가 아니며, 이를 위해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전면에 나서지 않는다면 국가적인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임.

3. 참고사항

- 관련 법령 : 「폐기물관리법」,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예산 조치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선희)

1 건의안의 취지

- 본 건의안은 2024년 사용종료가 예상되는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체 매립지 조성 등 주요 문제에 환경부가 수도권 3개 시·도와 함께 공동주체로서 능동적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하고자 제안되었음.

2 수도권매립지 조성 및 운영 현황

- 수도권매립지는 난지도 매립장 매립종료에 따라 수도권 3개 시·도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 처리를 위해 인천광역시 서구 거월로 일대에 약 1,600만㎡규모로 조성되었으며, 1992년 2월부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음(참고자료).
- 개장 당시 2016년 말 사용종료를 예상했으나, 1995년 쓰레기종량제 실시 후 쓰레기 반입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2025년까지 사용기간을 10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음¹⁾.
- 2015년 환경부장관과 3개 시·도가 함께한 합의사항에 따르면 수도권 매립지 잔여 매립부지 가운데 3-1공구(103만㎡)를 사용하고, 이후 대체매립지확보추진단을 구성해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만약 대체매립지 확보가 곤란한 경우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15%(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하기로 함.

1) 2018년 폐기물 반입량은 연간 374만 1천톤 규모이며(서울 42%, 경기 39%, 인천 19%), 반입폐기물은 생활폐기물(21%), 사업장폐기물(53%), 건설폐기물(26%)임.

- 하지만, 사용종료시한이 6년 남은 현재까지 대체매립지가 결정되지 않아 인천광역시 검단동, 오류동 등 매립지 인근 13개 주민단체는 현 매립지 사용시한 만료이후 추가 사용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함.
- 매립지부지확보와 조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할 때 조속한 대체매립지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 큰 혼란이 예상됨.

3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부의 참여와 역할

- 환경부는 현재의 수도권매립지 부지 조성에서부터 운영과 관리의 주요 참여자이며, 특히 매립면허의 17.5%를 소유하고 있는 매립면허권자임²⁾.
- 또한, 매립지 연장사용과 대체매립지확보추진단 구성과 운영 등을 합의한 2015년 6월 수도권매립지 4자협의체의 주요 참여자이기도 함.
- 특히,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해서는 3개 시·도간 이견조정과 관련부처 (해수부, 농림부, 기재부 등) 협상, 입지지역 주민갈등 해소 등 환경부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대적으로 요구됨.
- 환경부의 참여를 위해 서울시는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공동참여’를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환경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음.
- 수도권매립지의 조성이 당시 환경청의 주도로 이루어졌고, 현재까지 환경부가 수도권매립지공사의 업무와 회계 및 재산 등 대부분의 사안을 통제하는 등 지도·감독자로서의 역할을 현재까지 수행하고 있음.

2) 수도권매립지 매립면허는 환경부(17.5%), 서울시(40.9%), 인천시(41.6%)의 합유 상태이며, 인천시 동의 없이 매립연장 신청이 불가능함.

- 또한, 수도권매립지가 2,600만 수도권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한 이견조정과 부처협상 과정에서의 역할을 고려할 때 환경부의 적극적인 참여는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촉구하는 건의안의 취지도 타당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 론 요 지 : 없음.

7.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13명 전원 찬성)

8. 소수 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부의 적극 참여」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1214
----------	------

발의년월일 : 2019년 11월 13일

발 의 자 : 김태수, 이광성, 유정희,
김경영, 김광수, 김기덕,
김생환, 김정환, 김제리,
송명화, 송정빈, 최정순
의원 (12명)

1. 주 문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 2,600만 국민들이 배출하는 생활 폐기물과 건설 및 사업장폐기물을 최종처리하는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인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종료에 따른 문제 해결에 환경부가 적극 참여할 것을 건의함.

2. 제안이유

가. 지난 2015년 6월 체결한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 최종합의서」에 따라 3개 시도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최소화 노력과 선제적 조치의 이행을 전제로 잔여 매립부지(제3, 4매립장) 중 3-1공구(103만 m^2)를 사용하고, 대체매립지확보추진단을 구성·운영하여 대체매립지 조성 등 안정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하기로 함.

다만, 대체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m^2)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하기로 합의함

- 나. 서울시는 그간 매립면허권 양도·양수 신고 완료, 매립지 편입부지 보상금의 이전, 반입수수료 가산금(50%) 지원 및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 구성 등 최종합의서의 이행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바 있음
- 다. 올해 6월에는 3개 시·도지사 공동으로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관련 환경부와 3개 시·도 공동 추진 정책건의문」을 환경부에 제출하였고, 11월에는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대체매립지 조성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여 해당 중앙부처에 전달한 바 있음.
- 라. 수도권매립지는 건설 당시부터 환경부의 주도로 관리해온 광역폐기물처리 시설로 관련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모든 사항을 환경부가 통제하는 등 지도·감독의 역할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음
-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에 따른 문제는 비단 3개 시·도만의 문제가 아니며, 이를 위해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전면에 나서지 않는다면 국가적인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4. 이 송 처

가. 국회 : 환경노동위원회

나. 정부 : 환경부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부의 적극 참여」 촉구 건의안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 최종합의서』에 따라 환경부와 3개 시·도(서울, 인천, 경기)는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안정적·효율적 처리를 위한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문제와 관련하여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문제는 3개 시·도간 이견조정, 중앙부처(해수부, 농림부, 기재부 등) 협의, 입지지역 기초자치단체 지역주민 갈등 해소 및 국비 지원방안 마련 등의 현안 문제로 인해 3개 시·도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환경부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수도권매립지는 수도권 3개 시·도 2,600만 국민들이 배출하는 생활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을 최종처리하는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이다. 수도권매립지는 서울 난지도 매립장의 포화 문제 해결을 위해 1987년 환경청에서 대통령 재가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국가기반시설로서 현재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환경부가 관리·감독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는 2019년 반입량 기준으로 2024년 말 사용종료될 것으로 예상되어 대체매립지 조성 등에 대한 3개 시·도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장래 국가적인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것은 자명한 현실이다.

따라서 수도권지역의 안정적인 폐기물처리를 위해 환경부가 대체매립지 조성 추진의 공동주체로서 참여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건의한다.

- 환경부는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해 수도권 3개 시·도와 함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으로서 공동 참여하라.
- 환경부는 대체매립지 조성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국비지원 등 정부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 환경부는 대체매립지를 현 수도권매립지의 대체지로 인식하여 매립지 조성에 적극 협력하라.

2019년 11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